미국 증권법

(SECURITIES ACT OF 1933)

미국의 1929년 주가폭락 이후 경제재건을 위한 뉴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정된 자본시장규제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인 1933년 증권법은 유가증권의 최초분매(발행)에 관하여 규제하는 법이다. 이 법상 유가증권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과 관련된 중요한 재무정보 및 비재무정보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법의 목적인 투자자의 보호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도시 기망, 허위,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 한편, 사모발행, 소액공모, 주 내에서의 발행, 지방자치단체, 주나 연방정부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신고(등록)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자본형성을 촉진하였다. 증권법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는 유가증권에 관한 공정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, 공정한 증권가격의 형성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. 이 법은 1933년에 제정되어 2004년 9월 개정을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,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인 SEC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집행 및 관리를 통하여 적용하고 있다.

미국 **증권법**은 **제1조** 명칭, **제2조** 정의; 효율성, 경쟁 및 자본 형성의 촉진, **제2A조** 스왑계약, **제3조** 이 법상의 유가증권의 종류, **제4조** 신고면제거래, **제5조** 주간통상 및 우편과 관련된 금지, **제6조** 유가증권의 신고(등록), **제7조**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, **제8조**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및 정정신고서, **제8A조** 중지명령, **제9조** 명령에 대한 법원심리, **제10조** 사업설명서에 요구되는 정보, **제11조** 허위유가증권신고서로 인한 민사책임, **제12조** 사업설명서 및 구두의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발생한 민사책임, **제13조** 소송의 제한, **제14조** 위반계약의 무효, **제15조** 1인 이상의 지배자의 책임, **제16조** 부가적 구제방법; 구제방법의 제한, **제17조** 사기적 주간통상거래, **제18조** 주식 청약에 대한 주규정의 면제, **제19조** 위원회의 특별권한, **제20조** 범죄에 대한 금지명령 및 기소, **제21조** 위원회에 의한 청문, **제22조** 범죄 및 소송에 대한 관할권, **제23조** 위법적 표시, **제24조** 벌칙, **제25조** 유가증권을 감독하는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관할권, **제26조** 규정의 가분성, **제27조** 사적 증권소송, **제27A조** 예측정보보고서를 위한 면책조항의 적용, **제28조** 일반적 면제 권한, 유가증권신고서에 필요한 정보 목록으로 **별표(목록) A**, **별표(목록) B**를 그 내용으로 한다.